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43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이광희 · 김 윤 · 이주희
박지원 · 정진욱 · 이상식
김문수 · 강득구 · 윤종오
장종태 · 권향엽 · 송재봉
조계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해당 응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도권을 근무예정 지역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② (생략)</p>	<p>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해당 응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도권을 근무예정 지역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② (현행과 같음)</p>